

## 『현대정신분석』 논문 투고 규정

**【학회지 발간】**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하며 한글(국문) 논문과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논문을 함께 게재한다.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할 경우는 외국어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내용 및 요건】** 현대정신분석 이론가들에 관한 독창적인 논지를 개진하거나 이들의 이론을 철학, 문학, 종교, 심리학, 영화, 정치, 정신의학, 사회,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학술 분야나 임상, 실생활에서 응용한 내용을 다룬 논문을 게재한다.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었던 논문이나 저서에 포함되어 출판된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 미납이 없는 본 학회 회원으로 제한하되, 외국인이나 특별기고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특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고자의 자격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기고 방법】** 원고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뒤,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투고자는 학회 서식인 ‘논문 게재 요청서’를 작성해 심사논문과 함께 보내야 한다. 원고는 발행일 기준 50(45)일 이전에 제출한다.

접수처: <https://korcp.jams.or.kr>

문의처: E-mail: [lacan1998@hanmail.net](mailto:lacan1998@hanmail.net)

**【원고 분량】** 원고 매수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원고지 150매(A4 약 16매) 이내로 하며 200매(A4 약 22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외국어 논문은 6,000-8,000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분량이 150매(인쇄본 34매)를 넘을 때는 초과된 인쇄본 1매당 10,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하며 200매(인쇄본 45매)가 넘는 경우는 원칙상 신지 않는다.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제1저자의 이름을 필자 표시란의 제일 앞부분에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저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2인 이상이 집필했지만 제1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 이름 끝에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이라 표기한다.

**【원고 심사 및 게재 판정】** 학회에서 정한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세칙>에 의거 심사 후 게재를 판정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고자는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액의 발간 비용(전임 20만 원, 준·비전임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각주에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편당 30만 원 이상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논문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의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문을 재인쇄할 경우 필자의 동의 없이 출판하고 사후 필자에게 통보한다. 학교 교육용 자료나 개인 연구를 제외하고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다.

**【편집세부규정】** 다음과 같이 편집세부 규정을 제시한다. 아래에 제시된 논문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논문 작성

- 1) 한글프로그램이나 MS 워드로 작성하고 글자는 바탕체를 기본으로 한다.
- 2) 논문 편집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본문: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들여쓰기 18.0,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
  - 인용문: 왼쪽 여백 18, 오른쪽 여백 18, 들여쓰기 0, 줄간격 160%, 글자크기 9
  - 각주: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내어쓰기 11.0, 줄간격 130%, 글자크기 9
  - 참고문헌: 글자크기 9.5, 왼쪽/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31.5, 줄간격 160%
  - 초록(Abstract): 작성 형식은 본문에 준한다.
- 3) 본문 내용구분은 I, II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 4) 예술작품과 영화명은 < >로 표기하고, 필자가 인용하는 표와 도판은 표 1., 그림 1.로 표기하고 표와 그림의 제목을 명기한다. 문학작품의 경우 장편은 『 』, 단편 소설과 시 등은 「 」로 표기한다.  
예) <모나리자>, <시민 케인>, 표 1., 그림 1., 『죄와 벌』, 「소나기」

## 2. 서지사항

-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 2)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논문 지원에 대한 언급은 논문 제목 옆에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그리고 소속은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특정기관의 논문 지원이 없을 경우, 소속을 \*(위첨자 형태)로 각주로 기재한다.

예)

## 정신분석 주체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라캉 이론을 중심으로\*

홍 길 동\*\*

---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

\*\* 한국대학교.

### 3. 초록과 주제어(키워드)

- 1) 800자(띄어쓰기 공백 포함) 이내의 한글 초록을 필자의 이름 밑 박스 안에 제시한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 초록(요약문)을 첨부한다. 한글 초록은 800자 내외(대략 1행 25자로 감안하여 25행 미만), 외국어 초록은 100-350단어(대략 1행 11단어로 감안하여 10행 이상 18행 미만)의 초록 분량을 엄수한다.
- 2) 외국어 논문은 논문 서두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초록을 제시하고 논문 말미에 원고지 800자 내외의 한글 요약문을 첨부한다.

- 3) 필자의 영문 성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4) 초록 밑에 각각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를 5~8개 제시한다.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는 순서를 일치시킨다. 키워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되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4. 외국어 표기

- 1) 영문 저자명의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한다.

예) Lacan, J.

- 2)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 작품명)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외국어 용어는 언어를 불문하고 신조어, 원저자의 강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탤릭 표기하지 않는다. 단, 작품명과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주이상스(jouissance), 라랑그(Lalangue)

- 3) 두 개의 외국어를 나열할 때에는 쉼표로 병기한다.

예) ‘물’(das Ding, the Thing)

#### 5. 인용

- 1)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한 정보나 혹은 재인용의 경우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는 각주로 처리한다.

- 2)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 쪽수만 밝힌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 7)라고 말했다.

- 3) 앞에서 인용한 책을 다시 인용할 때는 (앞의 책, 쪽수)로 표기하며 동일한 저자의 다른 책을 인용할 때는 최초 인용처럼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4)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1996: 25)고 주장했다.

- 5)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한다.

예) (서용순 2004; 홍준기 2008), (James 1996a, 1996b)

- 6) 저자나 역자가 2명인 글은 (홍길동 · 홍길순), (Zizek & Milbank)으로 표기하고 3명 이상인 글은 (홍길동 외), (Keller, H., et al. 2008: 10)로 표기한다.

- 7) 재인용의 경우 원 저술을 먼저 밝히고 재인용된 저술을 밝힌다.

예) (김용준 1946: 185-6, 조요한 1999: 17에서 재인용)

- 8) 필자가 본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 ‘줄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다.

- 9) 세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인용 시작과 끝에 한글자판 상에 표기되는 큰따옴표(“ ”)로 본문 속에 처리한다(영문자판 상에 표기되는 인용 부호(‘ ’)가 아님에 유의할 것).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는 ‘ ’부호나

굵은 글씨로 처리한다.

- 10) 네 문장 이상을 인용할 경우,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본문과 한 칸 여백을 설정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 11) 인용할 때 필자가 생략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출판편집 작업시 [...] 로 바뀜),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 부호로 표시하고 이를 각주에 밝힌다.
- 12) (괄호) 안의 괄호는 아래와 같이 [ ]로 표기한다.  
예) (라캉[의 사상]과의) 관계는
- 13) 재인용의 경우에는(원저자명 원출판년도: 쪽수, 인용본 저자명 인용본 출판년도: 쪽수에서 재인용)으로 표기한다.

## 6. 참고문헌

- 1) 논문의 말미에 참고 문헌의 서지 정보(저자명, 도서명, 논문명, 학술지명, 학술지의 해당 권호, 발표 연도, 해당 쪽수 등)를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 2) 한글책의 저자 역할은 지음, 엮음, 옮김으로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 4) 참고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을 신되,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항목별 수록 순서는 논문, 저서, 신문·잡지, 인터뷰, 인터넷 자료 순으로 한다.
- 5)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1999b)
- 6) 동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 』, 서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이탤릭

으로 표기한다.

- 7) 각주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저서나 논문을 병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쓴다. 모든 항목은 마침표로 끝낸다.
- 8)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쓴다.

- 9) 발간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 10) 참고논문은 권수와 호수, 쪽수를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권호 구분에 없을 때에는 괄호 없이 표기한다.

예) 하상복 (2010).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인종 문학의 검토와 마마테이의 『새벽으로 지은 집』 다시 읽기」. 『새한영어영문학』. 52(2). 169-191.

- 11) 신문이나 잡지 기사는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예) “기사 제목”. <동아일보>. 1961년 10월 7일.

- 12) 전집류 제목은 아래와 같이 책 제목 뒤에 배치한다.

예) Sartre, J.-P. (1943). *L'être et le néant*. Coll. Tel. Paris: Gallimard.

- 13)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은 심포지엄 기고문과 논문 또는 포스터 발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형식을 사용한다.

심포지엄:

Contributor, A. A., Contributor, B. B., Contributor, C. C., & Contributor, D. D. (Year, Month). Title of contribution. In E. E. Chairperson (Chair). *Title of symposium*.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논문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

Presenter, A.A. (Year, Month). *Title of paper or poster*. Paper or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 14) 시청각 매체의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Producer, A. A. (Producer), & Director, B. B. (Director). (연도).

Title of motion picture[Motion picture]. Country of Origin:  
Studio.

**한글(우리말) 논문의 예:** 다음 예는 이미 출판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외국인 인명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과 독립인 용이 나오는 부분만을 예로 제시했고, 인용문의 번역은 원문을 따랐다.

## 푸코와 라캉

응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홍 길 동\*\*

<한글 초록>

▶ 주제어: 라캉, 시선, 욕망, 오브제  $a$ , 실재, 환상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연구논문임(KRF- 2009-A00158).

\*\* 한국대학교.

## I. 푸코의 유산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대하다. 그의 이론은 사학과 철학, 문학과 사회과학 및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히 인정받고 있다. 푸코는 특히 주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주체가 구조에 의해 구성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대표적인 (탈)구조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푸코의 30여년에 걸친 이론적 편력은 주체에 대한 구조의 우위라는 단순화된 구조주의적 공식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와 구조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구조주의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푸코는 자신의 이론적 변화를 담론 분석, 권력 분석, 그리고 주체 분석의 세 단계로 분류한 적이 있다(Foucault 1966: 6). 이 중에서 담론과 권력의 개념은 모두 구조의 개념을 변형,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담론 혹은 권력에 대한 주체의 종속이라는 유사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

에피스테메(épistémè)에 대한 푸코의 다음 설명을 보자.

에피스테메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 인식론적 형상들, 학문들, 그리고 형식화된 체계들을 낳게 하는 언설적 실천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 에피스테메는 매우 다양한 학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주체나 정신 또는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통일성을 나타내는 인식의 한 형태나 합리성의 한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언설적 규칙성들의 수준에서 학문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제반 학문들 사이에서 일정한 시대 동안 발견될 수 있는 관계들의 총체이다(Foucault 1969: 250).

이처럼 푸코는 에피스테메를 일정한 시대 동안의 언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란 곧 고학적 모델을 발견해내는 일이었다.

\* \* \*

“길들여진” 광기는 “이제 이성의 척도와 진리의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가 르네상스가 해방시켰던 광기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다”고 말한다(Foucault 1969: 35, 36, 38). 그리고 이 침묵의 장소는 곧 종합병원이다. 광인들을 태우고 도시들을 전전하던 선박은 이제 병원으로 대치되고, 광기는 병원의 울타리 속에 감금되어 침묵당하게 된다.<sup>1)</sup>

1656년에 설립된 오빠딸 제네랄은 따라서 광기가 이성에 의해 길들여져 침묵당하고 감금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기서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이 종합병원의 성격이다.

처음부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오빠딸 제네랄은 의학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준사법적 구조였고, 이미 제정된 권력 기관과 더불어 그리고 법원 밖에서 결정하고, 판결하고, 처형하는 행정기관이다. [...] 거의 절대적 권위, 항소가 불가능한 사법권, 저항이 불가능한 집행영장. 오빠딸 제네랄은 왕이 경찰과 법원 사이의, 법의 한계지점에 설립한 이상한 권력이었고, 제 삼의 억압의 질서였다(Foucault 1969: 40).

푸코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의학적 기관이기보다 광인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사법적 기관이요 감호소

---

1)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Lorenzo 2016: 108-109) 참조.

였다. 푸코는 특히 이 감호소에서 행사되는 권력을 강조한다. 이 감호소에 수용될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은 병원건물 내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사법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 감찰하고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했다.

## 참고문헌의 예

### 참고문헌

- 하상복 (2010).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인종 문학의 검토와 마마데이의 『새 벽으로 지은 집』 다시 읽기」. 『새한영어영문학』. 52(2). 169-191.
- 홍준기 (2002). 「라캉과 프로이트·키에르케고르: 불안의 정신분석」. 김상환 ·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191-228.
- “특집 좌담”. <교수신문>. 2005년 1월 12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021>.
- Cooper, S. (2008). “Identification Today”. *Nottingham French Studi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47(3). 103-10.
- Dunning, E. & Mennell, S. (1996). “Preface”. Elias, N. *The Germ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lias, N. (1939a).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I*. 박미애 옮김 (1999a). 『문명화과정 I』. 한길사.
- \_\_\_\_ (1939b).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II*. 박미애 옮김 (1999b). 『문명화과정 II』. 한길사.
- \_\_\_\_ (1996). *The Germ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eud, S. (1955). “Family Romances”.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9. 김정일 옮김 (1996). 「가족 로맨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Foucault, M. (1976). *Historie de la Sexualité*. 이규현 옮김 (2010). 『성의 역사. 1권: 얇의 의지』. 나남.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권기돈 옮김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 (1992).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 · 황정미 옮김 (1995). 『현대사회의 성 · 사랑 ·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Keller, H., et al.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 Recognition and Self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 1745-1760.

Kernberg, O. (1978). *Borderline-Störungen und pathologischer Narzißmus*. Frankfurt am Main: Suhrkamp.

Kierkegaard, S. (1999). *Begrebet Angest*. 임규정 옮김 (1999). 『불안의 개념』. 한길사.

Kohut, H. (1973). *Narzißmus. Eine Theorie der Psychoanalytischen Behandlung Narzißtischer Persönlichkeitsstörung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Lacan, J. (1997).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nis Porter. New York: Norton.

Lash, Ch.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최경도 옮김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문학과지성사.

Luhrmann, B. (Director). (2013). *The Great Gatsby*. USA: Warner Bros. Pictures.

Sartre, J.-P. (1943). *L'être et le néant*. Coll. Tel. Paris: Gallimard.

Sennette, R. (1974). *The Fall of the Public Man*.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 (1998). *The Erosion of Character*.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Schwab, K. (2018, Sep). *The Future of Job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Davos.

Soler, C. (2002). *L'inconscient à Ciel Ouvert de la Psychose*.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Verhaegue, P. (2004). *On Being Normal and Other Disorders*. New York: Other Press.

Vinciguerra, R. (1999). "The Paradoxes of Love". *Psychoanalytical Notebooks*. 3. <http://www.londonsociety-nls.org.uk>.

**[Abstract]**

Foucault and Lacan  
A Psychoanalytic  
Reflection on Foucault's Concept of Gaze

Hong, Gil-Dong\*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 Key Words: psychoanalysis, visual literacy, transgression,  
anamorphosis, objet *a*

---

\* Hankuk University.

**외국어(영어) 논문의 예:** 다음 예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요약문을 새로운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 Negative Dialectics of Woman in Theodor Adorno

Hong, Gil-Dong\*

### I. Introduction

When one discerns a certain pattern in Adorno of representing woman, it is necessary to theorize whether this pattern derives from a point of view that collectivizes and homogenizes woman (or the feminine) for a political as well as philosophical reason, which should certainly be distinguished from the polemic impasse of appellation per se. I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especially to a few women who appear in his *Minima Moralia*, in relation to the figuration of woman in *Dialectic of Enlightenment* in order to juxtapose and parallel the female appearances and their meaning.

Whereas power that instantiates through man's self-domination

---

\* Hankuk University.

categorically precludes man's experience of domination, woman's experience of power is mediated by the family, in which she experiences domination in the form of patriarchy. Horkheimer and Adorno write:

Before, thralldom in her father's house would awaken an emotion in a girl which seemed to point to freedom, even though it was actually realized either in marriage or somewhere else outside. But now that a girl has the prospect of a job before her, that of love is obstructed (Horkheimer & Adorno 1944: 107).

## 『현대정신분석』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학회는 본 학회는 『현대정신분석』의 편집 업무를 처리하고 심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은 다음과 같은 지침 아래 발행한다.
1.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 50(45)일 이전으로 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 제3조:** 편집위원회는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은 대학의 교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학문 분야별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3장 편집위원회 기능

-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현대정신분석』의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논문분량, 투고 및 심사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익명의 조건하에서 심사 내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제 7조와 제 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장 편집회의

**제10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또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편집회의는 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논문 심사 및 게재 절차

본 규정은 엄정한 원고 심사 과정을 통해 연구 논문의 경쟁력 강화와 본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행 세칙을 따른다.

### 제1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예정 50(45)일 전까지 제출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접수하며,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필자에게 보낸다.

### 제13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전공별로 논문을 분류한 후 논문 1편당 2~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각 전공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학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를 위

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 논문 1부, 논문심사 규정 1부, 논문 심사 요청서 1부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 **제14조: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이나 서평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판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5조: 심사**

심사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 학회에서 제공한 “논문심사보고서” 서식에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 항목은 논문의 독창성과 의의, 논문제목의 적합성, 연구목적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등으로 각 항목을 세분하여 심사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5점, 부분 수정 후 게재 4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점, 게재 불가 2점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세 명의 심사위원 판정을 합산하며, 최종적으로 합산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무수정 게재(게재 가능): 13점 이상
- ② 부분 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11-12점
-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수정 후 재심): 9-10점
- ④ 게재 불가: 8점 이하

#### **제17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 **제18조: 논문 수정**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원고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구에 대해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게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 **제19조: 논문 교정**

발간 전에 모든 논문 제출자에게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여 교정본을 요청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논문 제출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 후에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본 학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20조: 게재 취소**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 된 뒤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나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1조: 저작권**

본 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준하며, 그 적용이 어려울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 (사)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연구에 관련된 연구윤리 규정

### 전 문

사단법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진하고 회원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 사회문화 및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사회 윤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 제1절 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표절 및 자기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글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논문 저자는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표절)하지 않는 것처럼, 이전에 출판한 자신의 저작물을 새로운 학문지식으로 발표(자기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이 보다 광범위한 경우 중복된 글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2조: 출판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방식으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자기 맘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과도하게 주관적인 자기주장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절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을 승인하는 때부터, 그리고 논문 투고자들은 투고 시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회원은 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도 투고된 논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때,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학회에 위반 사례를 보고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장 학술연구 윤리위원회 규정**

#### **제1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를 심사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6인
3. 간사: 1인

####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

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제4조 (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2. 본 회의의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5조 (위원회 회의)

1. 소집: 회장이나 이사회, 혹은 윤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혹은 정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비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체 내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사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나 학술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대상 회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

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제7조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제8조 (징계)**

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마친 후 징계의 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논문 무효
-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3) 회원자격 정지
- (4) 회원자격 박탈

2.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심사 결과와 이사회 결정 등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학회 학술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사)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The Korean Society for Contemporary Psychoanalysis)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프로이트와 라캉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현대 정신분석 이론과 치료법을 연구함으로써 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문학, 문화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한의학, 언론학, 예술, 영화, 법학, 종교학, 교육학, 정치학 등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현대 사상의 흐름에 연계하여 인간과 문화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창출하며, 나아가 정신병리를 예방하고 이해하며 치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단 근무처 및 학회에서 정한 사무실에 둔다.

### 제2장 학회 활동 및 사업

#### 제4조 (종류와 심사기준)

**제1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을 한다.

- (가) 학회지 『현대정신분석』 간행
- (나) 정신분석 관련 학술 총서 및 연구 서적 간행 및 보존
- (다) 학술대회, 세미나, 콜로키움 등 행사 개최 및 주관
- (라) 교육 및 연수 사업
- (마)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바)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항** 학회지 및 학술서적 발행 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항** 본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세칙은 본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월례학술세미나로 구분한다.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2회(여름, 겨울)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월례학술세미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 회 원: 현대정신분석에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준 회 원: 현대정신분석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다) 단체회원: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도서관

(라) 평생회원: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제7조 (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활동과 사업을 위해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후 총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8조 (입회)**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회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책정한다.

**제9조 (퇴회)**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하여 자동적으로 퇴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입회를 희망할 경우 입회비는 면제하되, 미납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본회에 불이익을 끼친 회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제4장 총 회****제10조 (소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연 2회의 학술대회가 끝나는 날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개회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선출
- (나) 예산 및 결산 결의
- (다) 회칙 개정
- (라) 기타 본 학회 운영 기본에 관한 사항

**제5장 회 장****제13조 (선출)**

본회는 회장을 두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무 및 권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신임회장은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부회장 및 이사를 구성해야 한다.

#### **제16조 (권한 대행)**

회장은 5~6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하며, 회장이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6장 이 사**

####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와 기타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제18조 (선출)**

부회장과 상임이사, 기타 상임이사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다.

(가) (부회장, 상임이사)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 편집 및 출판위원장: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총괄하고 기타 연구도서 및 기타 학술자료의 기획과 간행을 담당한다.
- 총무이사: 학회 운영을 총괄 기획한다.
- 편집이사: 본 학회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담당한다.
- 재무이사: 학회 회계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기획이사: 학술사업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정보이사: 학술 및 학회 관련 정보의 온라인 업무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이사: 학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학문후속세대이사: 차세대 라캉 연구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나) (비상임이사) 회장이 필요에 따라 선임하며 학회의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1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상임 이사회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상임 이사회회의 개최 및 결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 (상임 이사회회의 권한)

상임 이사회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 편성
- (다) 총회의 소집
- (라) 회원의 가입 및 퇴회
- (마) 본회 재산 관리
- (바) 총회에서 선임한 사항 사정
- (사) 시행 세칙의 제정
- (아)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장 고문회

**제23조** (고문회)

고문회는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현 회장은 동회 의장이 된다.

**제24조** (기능)

고문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후원을 담당한다.

## 제8장 편집위원회

**제25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논문 심사 등을 담당한다.

**제26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가 복수인 경우, 회장은 편집이사 중 한 명의 편집위원장을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 (구성)**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사회·문화·문학·예술·임상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장 학술연구윤리위원회**

**제28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연구윤리를 심사하고 감독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9조 (구성)**

위원회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가운데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윤리규정에 명시한다.

## **제10장 감 사**

**제30조 (선출)**

본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권한)**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지회)**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조직, 운영, 권리, 의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결의한 내규에 근거한다.

**제11장 재 정**

**제3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대회참가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